



2003년 달라지는 농업관련 제도

농어가 부채 금리인하

-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 연 4~5%에서 3%로 인하
- 연대보증 피해자금 금리 연 5%에서 3%로 인하
- 1년 이상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액에 대한 1년치 이자 중 30% 환급

소득보전 직불제 확대시행

- 2002년산부터 수확기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폭의 80% 정부 보전

경영이양직불제 개선

-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75세 이하(사고, 질병 등의 경우 60세 이상)
- 경영이양보조금 단가는 1ha당 281만원에서 289만원으로 인상

친환경직불제 논·밭 구분시행

- 논 부문은 기존 논농업직불제로 통합 시행, 친환경농업 실천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추가 지급
- 밭 부문만으로 사업을 특성화

생산조정제 도입

- 3년간 휴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300평당 30만원 보상금 지급
- 단, 휴경지에 관상수, 경관작물, 녹비, 사료작물 등 비상업적 작물 재배는 허용

농작물 재해보험 확대

- 사과, 배 대상지역 전국 확대
- 부가보험료(운영비) 재정지원 현행 70%에서 80%로 상향조정
- 풍속기준을 기상청 발령 태풍주의보로 완화

- 보험가입시기는 3월에서 2월로 조정

축산업등록제 도입

-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, 양돈업, 양계업 기타 가축사육업 및 계란집하업은 시장·군수에게 등록

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대상자 확대

- 초지 및 사료포를 10ha 이상 확보하고 있는 자로 확대

한우다산장려금 지급단가 축소

- 3산 이상은 15만원, 5산 이상은 20만원으로 대폭 축소

도축장 의무도축대상 가축 확대

- 소, 말, 양, 돼지에서 닭, 오리, 사슴, 토끼, 거위, 칠면조, 메추리, 꿩 등 12개 축종으로 확대

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

- 전염병 발생 신고자는 신원 보장
-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교육 의무화
-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농

농업인 자녀 교육지원 확대

- 1ha 미만의 농지 소유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(실업계에서)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
- 입학금, 수업료 전액 지원

도시민 농지소유 허용 외

- 비농업인도 주말·체험영농을 목적으로 가구당 1000㎡ 미만까지 농지 소유 가능
- 단, 농작업의 위탁은 허용되지만 휴경이나 임대는 제한
- 농업진흥지역 외 농업 목적의 농지 취득은 소유 상한선 폐지
- 농촌지역에 교육·의료·복지·관광·체육 관련 시설을 짓는 경우 농토가 없어질 때마다 부과하는 농지조성비를 50~100% 감면
-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인 공동생활시설을 지을 때도 농지 조성비 전액 감면
-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 소유 가능

양곡구매전용카드 도입

- 양곡판매업자가 가맹점이 되고, 소비자 도소매상 등 수요업체가 회원이 되어 판매대금을 전용카드로 결제

농산물원산지 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
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로 강화

기능성 쌀 부가가치세 면제

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 도입

농촌투자유치센터 이관

- 기존 농림부 소속에서 농업기반공사로 편입 운영
- 한계농지정비사업이 농업기반공사 자체사업으로 추진

관광농업사업 시행절차 간소화

- 기존 사업지구 지정받은 후 별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해오던 것을 시장, 군수의 승인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

농어촌민박사업 완화

- 농어촌민박사업 대상을 일반인까지 확대 시행
- 농어가 5가구 이상에서 개별 참여 가능

국토이용 관리체계 일원화

-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, 비도시지역에는

국토이용관리법이 따로 적용됐으나 2개 법을 통합, 도시·비도시지역 구분없이 도시계획을 수립

- 용도지역은 도시·준도시·준농림·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로 구분했던 것을 준도시·준농림지를 관리지역으로 통합, 4개로 줄이고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·생산·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누게 됨

전국토 개발허가제 도입

- 도시지역에 한정되던 개발허가제가 비도시지역 등 전 국토에 확대 실시
- 건축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,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가 결정

토지보상체계 일원화

- 공공용지손실보상특별법과 토지수용법에 별도 규정돼 있던 토지보상체계가 일원화돼 보상계획 공고, 보상액 결정, 협의요청 등의 절차가 합쳐짐
- 수용시 보상이 등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 가능

준농림지역 제도 폐지

-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소규모 아파트 개발 금지
- 음식점·숙박업소 등도 엄격하게 규제

농가도우미지원사업 전국 확대

- 전국 163개 농촌지역에서 실시되던 농가도우미사업이 특별시·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

건강보험료 8.5% 인상

- 직장인은 월 평균 3만8350원, 지역 가입자는 가구당 4만2000원

농기계 임대 시범사업

- 영세, 소농의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를 지원
- 7개 회원농협에 시범 지원

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%에서 7%로 상향조정

농어민연금 최저등급 보험료, 3분의 1에서 50%까지 지원확대

대형 농기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

- 농기계 가격 3,000만원 이상의 대형 농기계는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

탁주·약주·청주, 알코올 도수 제한 폐지

- 민속주와 농민주의 제조시설 기준도 완화 민농연

